

◆ 政府施策 ◆

상공부, 業種專門化시책추진 방안 마련 - 專門化업종 15개로 분류 -

정부는 국내 대기업 그룹의 업종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전문화 업종을 전기·전자 및 정보산업등 15개 분야로 분류, 자산총액 기준 30대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2~3개의 주력업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력업종에 속한 주력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조달, 기술개발, 공업입지상의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기로 했다.

상공부는 업종전문화 시책추진방안에서 업종전문화시책의 대상 기업그룹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정한 자산총액기준 30대 기업집단으로 하되 업계의 자율적인 선택에 맡기기로 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에 의한 자산총액기준 30대 그룹과 여신관리 규정에 의한 대출기준 30대 그룹이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 자산총액기준 30대에는 속하나 대출금 기준 30대에는 속하지 않는 한양과 미원그룹은 업종전문화 대상에 포함시키고 대출금기준 30대에는 속하나 자산총액기준 30대에는 속하지 않는 대한유화와 삼양사는 업계의 자율적인 선택에 일임키로 했다.

이들 대상기업들은 정부가 전문화업종으로 분류한 섬유, 목재·종이, 에너지, 화학, 비금속, 철강 및 철금속,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식료품, 건설, 유통 및 운수, 농·수산업, 금융·보험업·기타서비스업등 15개 업종중 대기업의 참여문제가 별도차원에서 검토돼야 할 농수산업, 금융·보험업, 기타서비스업등 3개업종을 제외한 12개업종에서 업계가 자율적으로 주력업종을 선정할 수 있다.

그룹별 주력업종 선택은 기업집단 규모별로 매출액, 대출금, 영위업종등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고려, 상위 10대 기업집단은 3개, 11위 이하는 2개의 주력업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력업종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에서만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참여 업종은 당해 기업집단의 주된 영위업종이라고 볼수 없을 뿐만아니라 비관련업종 다각화를 억제하고자 하는 전문화시책방향에도 부합되지 않아 선정을 허용치 않기로 했다.

각 기업집단은 주력업종에 속하는 기업중 전후방 연관효과가 크고 기술융합도가 높은 기업으로서

매출액 비중이 10% 이상인 기업을 주력기업으로 선정토록 했다.

주력기업은 원칙적으로 주력업종에 속한 모든 기업이 포함돼야 하나 30대 기업집단의 주력업종에 속한 기업 수가 너무 많고 기업집단별 업체 수도 커다란 차이를 보임에 따라 해당업종내에서 비중이 큰 기업으로 주력기업 선정을 제한했다.

또 단일기업에서 여러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업종전문화 시책 실시후 주력기업이 여러 업종에 참여하게 될 경우에는 매출액 또는 부가가치비중이 일정을(예: 70% 이상) 이상인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분류키로 했다.

이밖에 기업이 경영여건의 변화로 주력업종 및 기업을 변경하고자 할때는 최초 주력업종 및 기업 선정후 3년이 경과한 뒤에 변경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업집단이 비주력업종에 속한 상당수의 기업을 매각한 경우에는 주력업종에 속한 비주력기업을 2개이내에서 주력기업으로 추가 선정하거나 1개의 주력업종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주력기업 및 업종의 추가는 매각한 업체의 총자산규모 범위내에서만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투자기관 물자구매 조달청에 위탁 - 1억원 이상 물자구매, 1백억원 이상 시설공사 -

정부는 입찰비리를 근절키 위해 정부투자기관의 1억원이상 물자구매와 1백억원이상 시설공사는 조달청에 위탁, 발주토록 할 계획이다.

조달청으로 이관될 정부투자기관의 물자구매대상은 1억원이상으로 하되 한전의 변압기와 같은 특정기관의 중점구입물품등은 제외키로 했다.

또 시설공사는 1백억원이상 공사중 PQ(입찰자격 사전심사) 공사 대안입찰공사 설계시공 일괄공사(턴키베이스)등을 포함키로 했다.

23개 정부투자기관의 92년도 물자구매액은 4조5천억원, 시설공사발주금액은 5조4천억원으로 총계약 규모가 9조9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조달청을 통해 구매한 물품과 공사계약액의 1.3배에 이르는 규모이다. 특히 한전과 통신공사가 압도적 비중을 차지해 정부투자기관 전체 물자구매액의 80%를 차지한다.

調達市場 外國企業參與 확대

- 정부, GATT조달협상 2차 讓許案 확정 -

정부는 정부조달시장에서의 외국기업 참여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GATT 정부조달협상 제2차 양허안을 대외협력위원회에서 확정, GATT에 제출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조달시장에서 외국업체에 비해 우대를 받아왔던 국내업체들은 앞으로 보호장벽이 대폭 없어지게 되는 등 외국업체와 정면승부를 벌일 수밖에 없게돼 이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에 확정된 제2차 양허안에 따르면 작년 5월에 제출한 1차 양허안보다 외국기업의 참여가능 범위가 전반적으로 크게 확대돼 중앙정부기관은 정부조직법에 의한 46개 기관중 안보관련기관을 제외한 42개 기관을 대상으로 물품과 서비스 및 건설구매를 양허했다.

또 지방정부기관은 지방재정법에 의한 상급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와 5개 직할시 및 9개도를 중심으로 물품, 서비스 및 건설구매를 양허했고 기타 공공기관은 정부투자관리기관 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23개 정부투자기관을 대상으로 물품구매만을 양허하도록 했다.

서비스와 건설분야는 UR서비스협상에서 양허한 업종범위내에서 국내산업여건과 정부구매비중 등을 고려, 대상업종을 선정했다

그러나 양곡수매등 정부기관의 농산물관련 구매와 중소기업제품 특별구매등 예산회계법상의 수의구매계약등을 협정대상에서 제외했고 개별양허기관별로도 한국전력의 발전기자재 및 일부 중전기기품목과 한국통신의 통신망장비등을 예외로 설정하는 등 국내 일부 취약산업에 대한 정책적인 보완대책도 마련했다.

세부부문별로는 중앙정부기관(ANNEX 1)의 경우 물품과 서비스의 경우 종전 13만SDR(1SDR : 약 1천만원) 이상으로 한정하던 것을 11만5천SDR 이상으로 확대하는 동시 종전 공공기관으로 분류했던 철도청을 정부기관으로 변경, 외국업체의 입찰참여 범위를 확대했다.

또 지방정부기관(ANNEX 2)의 범위에 서울특별시와 5개 직할시외에 추가로 9개도를 대상으로 포함시켰고 지방자치법상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기관의 양허대상중 1차 양허안에서는 제외시켰던 서비스(45만SDR 이상)와

건설(1500만SDR 이상) 부문을 추가했다.

기타 공공기관(ANNEX 3)의 경우는 한국전력등 정부투자기관관리법에 의한 23개 정부투자기관을 대상으로 지정, 1차안보다 19개기관이 늘어났다.

또한 서비스(ANNEX 4)부문도 대폭 확대, GATT분류인 GNS/W/120에 따른 업종중 사업·통신·환경·운송분야의 35개 업종을 양허, 1차안의 14개 업종보다 21개업종이 확대됐다.

양허대상분야는 중앙정부기관이 11만5천SDR, 지방정부기관이 45만SDR이상 이다.

건설분야(ANNEX 5)의 양허업종도 확대, UN분류 CPC 51군 8개 업종중 7개 업종을 양허, 1차 양허안의 일반건설분야 4개 업종에 전문건설분야 3개 업종을 추가했으며 양허대상분야는 중앙정부기관의 경우 하한선을 450만SDR, 지방정부기관은 1500만SDR로 정했다.

國際入札참가 자유화 될 듯 — 상공부,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검토 —

내년부터 현행 대외무역관리규정상의 국제입찰 참가업체 제한 및 승인제가 폐지되고 업체 자율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최근 상공자원부가 업체 자율경쟁 촉진을 통한 대외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현행 대외무역 관리규정상의 국제입찰참가 제한제도를 전면 개편키로 방침을 세움에 따라 현재 업종별로 최종 의견수렴에 나서고 있다.

상공부는 지난달 관련업체와의 모임에서 현행 대외무역관리 규정상 500만달러 이상 규모의 국제입찰 참여시 업체수를 3개 업체로 제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현행 제도가 국내업체의 자율경쟁을 저해하고 있는 만큼 대외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관련규정의 전면 개편을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상공부는 연말까지 이에 대한 업종별 최종 의견이 모아지는 대로 개편 작업을 마무리 짓고 내년 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상공부는 국제입찰참가 제한 제도 개편 작업과 관련, 국제입찰 참가 자유화에 따른 업종별 업체들의 의견을 가급적 그대로 수용할 방침이나 국제입찰 참가제한 및 승인제를 폐지하는 대신 과당경쟁이나 덤핑입찰 방지를 위한 처벌규정강화등 사후관리제를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을 아울러 세워놓고 있다.

「中企 政策資金」
中企기반조성資金으로 統合
－ 輸産貸 · 技術개발 資金등 대상 －

農 · 水 · 畜産 및 中小企業에 대한 政策資金이 한국은행 再割지원에서 財政지원으로 내년부터 전환된다.

특히 수출산업설비자금 · 技術개발자금 · 공해방지시설자금 · 소재 및 부품운전자금 · 수요자금등이 ‘중소기업基盤造成資金’으로 통합 · 일원화된다.

財務部에 따르면 정부는 新경제 金融改革계획에 따라 농수축산자금 및 중소기업관련 한은의 재할지원을 재정지원으로 전환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새해예산에 5748억원의 재정용자 재원을 확보해 놓고 구체적인 운용방안을 마련중이다.

현재 韓銀재할지원대상중 내년부터 재정지원으로 전환될 자금과 내년중 지원규모는 △영농자금 1700억원 △영어자금 580억원 △양축자금 208억원등 농수축산자금이 2488억원이다.

또 금융기관의 중소기업관련자금 취급분에 대한 재정지원은 △수출산업설비자금 2100억원을 비롯 △기술개발자금 40억원 △공해방지시설자금 40억원 △소재 · 부품산업운전자금 600억원 △수요자금 480억원등 모두 3260억원이 계상돼 있다.

財務部는 현재 이들 자문에 대한 한국은행의 재할금리가 연 3~5%인 반면 재특용자는 최저금리가 5%로 운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재특용자금리를 인하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정책자금대출금리가 오르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수출산업설비자금 · 技術개발자금 · 수요자금등 5종의 중소기업 정책지원자금을 중소기업기반조성자금으로 통합 · 운용하되 관계 규정을 마련, 금융기관이 대출을 취급할 때 용도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93년중 韓銀재할의 財政 전환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92년말 잔액	94년중 지원액
농수축산자금	16,788	2,488
△ 영농자금	8,248	1,700
△ 영어자금	5,782	580
△ 양축자금	2,758	208
중소기업 관련자금	42,048	3,260
△ 수출산업설비자금	30,444	2,100
△ 기술개발자금	294	40
△ 공해방지시설자금	339	40
△ 소재·부품운전자금	6,537	600
△ 수요자금융	4,434	480
계	58,836	5,748

工振廳 행정규제緩和 추진현황

- 32개 課題선정 23개事項조치 -

공진청은 기업들의 자발적인 품질향상과 생산활동을 촉진하고 행정규제에 따른 각종 경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제도개선을 통한 행정규제완화를 적극추진하고 있다.

공진청은 이같은 행정규제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올해 각종 인·허가요건 완화등 32개 과제를 선정, 23개 사항의 행정규제 사항을 폐지 또는 완화했으며 법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는대로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공진청은 앞으로도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각종 행정규제를 과감히 제거함으로써 업계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 나갈 계획이다.

공진청의 행정규제 완화조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KS표시업체 품질관리담당자 의무고용완화 = 품질안정 및 향상을 위해 KS표시허가를 받고자 하는 기업이 지정하도록 돼있는 품질관리담당자의 자격요건중 교육시간을 200시간에서 100시간으로 단축 (5월시행)

▲ KS표시업체의 보고사항 및 문서비치 의무 완화 = KS표시허가업체에 대해 생산계획·생산실적·생산조건변경·품질관리담당자 지정 및 변경·공장양도·공장이전등 7가지 사항을 보고토록 하는 것을 연 1회 생산상황보고로 통합하고 공장이전 보고만 통지로 변경 했으며 의무적으

▲ KS표시허가 취소공장의 재허가신청 제한완화 = KS표시허가 공장의 사후관리 결과 기준미달로 허가 또는 승인이 취소된 경우 재허가신청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완화 (6월시행)

▲ 등급사정공장의 품질관리 담당자 의무고용 완화 = 등급사정 공장의 품질관리전문가 확보에 대한 의무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하고 전체평점에 의거 등급사정을 받도록 개선 (5월시행)

▲ KS공장 및 등급사정공장의 보고사항 감축 = KS공장 및 등급사정공장의 허가내용 변경에 따른 보고는 시·도에 하고 허가증 또는 등급사정서의 갱신신청은 공진청에 하도록 이원화돼 있었으나 이들 공장의 시·도에 대한 보고의무를 폐지(KS공장은 6월부터, 등급사정공장은 10월부터 시행)

▲ 전기용품 지정시험기관 시험원 자격요건 완화 = 전기용품 형식승인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원자격을 4년제 대학 또는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전기공학·전자공학·통신공학과를 졸업한 자이거나 전기기술사기사1급(1년이상 경력), 기사2급(3년이상 경력)의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하던 것을 전문대학, 공고졸업자 및 동등수준의 기술자격증 소지자에도 일정 실무경력이 있으면 시험원 자격인정(12월중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상반기중 시행예정)

▲ 전기용품 형식승인 업체의 생산관련 보고 폐지 = 전기용품 형식승인업체의 생산관련 보고사항중 생산개시보고는 폐지하고 생산실적 보고는 자체사후관리후 제출하는 전기용품공장검사보고서로 대체 (6월시행)

▲ 계량기 제작 및 수리업 설비기준 완화 = 계량기 제작 및 수리업 허가시 상공부령으로 반드시 자가소유토록 한 법정설비중 사용빈도가 낮은 고가의 시험검사설비는 타사업장 또는 전문기관의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완화 (8월시행)

▲ 전력량계의 검정유효기간 연장 = 기술진보에 따라 내구연한이 늘어난 IV형 전력량계의 검정유효기간을 7년에서 15년으로 연장 (7월시행)

▲ 계량기 형식승인 신청서류 간소화 = 계량기 형식승인 신청 구비서류중 세부부품 도면 제출의무를 폐지하고 제품설명서와 조립도면만 제출토록 간소화 (8월시행)

▲ 눈새김 탱크로리 = 눈새김 탱크로리는 계량법에 의한 검정대상 계량기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눈새김자를 차체와 분리되지 않게 고정토록 하고 있으나 안전을 고려, 눈새김자를 고정시키지 않도록 개선 (12월중 한국공업규격 및 검정기준을 개정, 내년 상반기중 시행예정)

▲ 자동차용 로우 범의 규격변경 = 자동차용 로우 범의 공업규격을 기존 우측운전자방

식(RHD)에서 우리실정에 맞게 좌측운전자방식(LHD) 기준으로 전환 (5월시행)

▲ 형식승인계량기의 제품규격변경에 따른 신고범위 완화 = 계량기 형식승인품종 제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크기, 모양, 색상등의 변경시에는 제품규격 신고대상에서 제외 (7월시행)

▲ 승강기 제조 및 보수업 등록내용 확인서류 간소화 = 승강기 제조업체의 부담완화를 위해 등록신청 구비서류인 검사설비별 검교정 성적서 및 기술인력의 경력증명서 제출을 면제 (6월시행)

▲ 승강기 관리업무 권한위임 = 승강기 관리업무중 제조업등록 업무 및 법규위반 승강기의 행정처분권을 공진청에서 시·도로 위임 (내년 1월시행 예정)

▲ 현장시험 제품수수료 인하 = KS허가를 위한 제품시험에서 시료가 중량물이거나 운반이 곤란해 현장에서 업체설비를 이용해 제품시험을 하는 경우 수수료를 검사기관에서 하는 것보다 20% 인하 (10월시행)

▲ 상품별 품질표시기준 변경 = 변질의 우려가 없는 화장지등에는 제조년월 또는 롯트번호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 (4월시행)

▲ 소비자불만 사항에 대한 품질개선대책 보고 = 각 시·도와 생산자단체등이 운영하는 불량품신고센터에 분기별 10건이상의 불만사항이 접수된 제조업체가 하도록 돼있는 개선대책 보고제도를 폐지 (6월시행)

▲ 의화획득용 원료 자율관리기업 선정절차 간소화 = 의화획득용 원료의 대응수출이행에 대한 자율사후관리기업 선정을 연 2회에서 수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선정시 한국무역협회 확인절차를 생략 (7월시행)

▲ 공업기술원 민원편의 = 각 지방공업기술원의 관할구역이 시·도 행정구역으로 돼있어 시험·분석의뢰시 인근에 지방공업 기술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방공업기술원에 의뢰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행정구역상의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편리한 기술원에 시험·분석을 의뢰할 수 있도록 조치 (5월시행)

▲ 비규격제품의 시험분석제도 개선 = 신규개발품목등 시험분석 기준 및 방법이 없는 품목의 시험분석 의뢰를 적극 수용하지 않을 경우 신제품 개발에 대한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 비규격품에 대한 시험분석 세부처리절차를 마련 (5월시행)

▲ PC표준화 상담실 설치 = 표준화관련제도 문의를 위해 민원인들이 직접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데이콤과 표준화제도 정보제공 계약을 체결, KS규격내용, 규격 제·개정 상황등

각종 민원상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PC 표준화상담실을 운영 (5월시행)

▲ 기술지도 조기실시 = 기술지도계획 공고와 신청접수등을 당해년도에 실시함으로써 실질적인 기술지도사업이 늦어지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당해년도 계획을 전년도 11월에 통합공고하고 11~12월중에 신청을 받아 지역별 업체별 지도기관별 분류를 완료하고 당해년도 1월부터 바로 진단 및 기술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8월시행)

▲ 기술지도 신청방법 개선 = 기술지도 신청시 직접 지도기관을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술지도계획 공고시 지도기관별 팩스번호를 안내, 업체가 지도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팩스로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도록 조치 (4월시행)

▲ 안전완구 표시제도(ST마크) 실시 = 완구류의 제조판매는 출고전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 유통시키도록 돼있어 검사에 따른 시간 및 비용부담을 야기시키고 있음에 따라 완구공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품질인증제도의인 ST마크 제도를 운영토록하고 ST마크를 부여받은 업체는 출고전 검사를 면제해주도록 하는 제도 도입 (금년말 시행예정)

▲ 수출전 의무검사 폐지 = 수출전 의무검사제도를 93년말까지 전면 폐지하고 내년초부터 업계의 자율적 의뢰검사제도로 전환하도록 수출검사법을 개정 (국회심의중)

▲ 공장품질등급제 폐지 = 품질등급제와 유사한 국제품질보증시스템 인증제도가 새로이 도입됨에 따라 유사제도의 중복운영에 따른 혼란과 낭비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공장품질등급제를 폐지하고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어 기존 등급공장이 국제품질보증시스템 인증을 받도록 유도 (11월중 공산품품질관리법 개정예정)

품질의 달(11月) 홍보 협조 요청

공업진흥청에서는 품질경영운동을 산업경쟁력 강화의 실천수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오는 11월 『품질의 달』을 맞아 TV, 신문, 라디오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품질의식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업체에서는 TV, 신문, 라디오등을 통한 각종 기업광고에 『품질제일주의』를 표방하는 문안이 반드시 삽입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사업장과 각종 사보 및 공문등에도 「품질제일주의」를 표방하는 문안의 슬로건을 표기하여 품질혁신 분위기가 고조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품질경영 대회』 개최 계획

■ 취 지

- 11월 「품질의 달」을 맞이하여 그동안 품질경영(QM) 활동에 앞장서 온 숨은 공로자와 우수업체를 발굴·포상 함으로써 기업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생산현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 경영자와 관리자, 현장근로자 한자리에 모여 품질한국 실현을 위한 품질혁신 의지를 굳게 다지고, 품질경영운동 확산분위기를 고조시킴으로써 품질경영을 전산업에 확산 정착시켜 신경계건설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함.

■ 주요행사

구 분	행 사 명	일 자 (기간)	장 소	비 고
본 행사	전국품질경영대회	'93. 11. 18(목) 10:30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부대행사	전국품질기술분임조 경진대회	'93. 10. 11(월) ~ 26(화)	한국종합전시장 국제회의실	16일간 개최
	신뢰성 심포지엄	'93. 11. 5(금)	한국표준협회 대회의실	
	품질경영 심포지엄	'93. 11. 12(금)	한국종합전시장 대회의실	
	품질경영유공자 및 우수 분임조 초청다과회	'93. 11. D	영 빈 관	우수분임조 품질명장등